

급여이용 정보제공

2023년

반도노인요양원



반도노인요양원 안내

1 시설현황 안내

1. 시설개요

시 설			
시 설 명	반도노인요양원		
시 설 장	문숙임	설 립 일 자	2010.09.28
제공급여종류	시설급여	장기요양기관인증번호	1-48170-00138

2.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 시설급여

3. 시설규모 및 설비

대지면적	7,697㎡					건축면적	4,192.56㎡				
시 설 설 비											
구분 시설별	침실	사무실	요양 보호 사실	자원 봉사 자실	의료 및 간호 사실	물리 (작업) 치료실	프로 그램 실	식당 및 조리 실	화장 실	세면 장 및 목욕 실	세탁장 및 세탁물건조장
요양원시설	41	2	1	1	1	1	3	1	7	3	1
주 요 시 설											
4층	생활실8, 사무실 및 대피공간, 프로그램실, 화장실(남/여), 현관, 공동거실, 다용도실, 다목적실, 탈의실, 목욕실, 계단실, E.V/복도										
3층	생활실12, 프로그램실, 탕비실, 다용도실, 자원봉사자실, 탈의실, 목욕실, 홀/복도, 화장실(남/여), 창고, E.V/계단실, 부계단실										
2층	생활실14, 의무실, 요양보호사 및 휴게실, 탕비실, 특별실, 물리치료실, 탈의실, 목욕실, 홀/복도, 화장실(남/여), 창고, E.V/계단실, 부계단실										
1층	생활실7, 면회실, 상담실, 식당, 주방, 기계실, 발전기실, 사무실, 원장실, 홀/복도, 화장실(남/여), E.V/계단실, 부계단실										

2 운영규정 개요

1. 입소정원 및 모집방법

- 143명 (일반실 111명, 치매전담실 32명)

2. 입소계약

가. 입소대상 - (반도노인요양원 일반실) 입소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에 따른 장기요양 1~5등급자 중 불가피한 사유, 치매 등으로 등급판회에서 시설급여 대상자로 판정받은 시설급여대상자
- ▶ 예외 : 2008.7.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일 이전, 시설급여 제공 장기요양기관에 입소해있던 자 중(운영 미지원시설은 2008.6.1. 이전 입소자) 장기요양 판정을 받지 않은 이용대상자

나. 입소대상 - (반도노인요양원 치매전담실) 입소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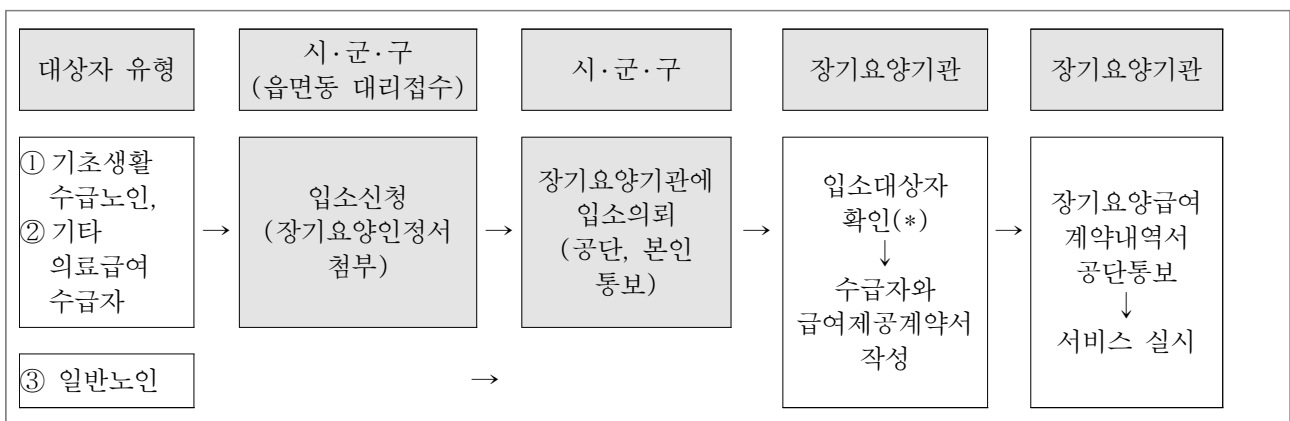
- ▶ 의사 소견서에 '치매'상병이 기재되어 있거나 최근 2년 이내 치매 진료내역이 있는 2~5등급 수급자 [2등급자 중 심신 상태나 거동상태 등이 현저하게 불편한 자(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6조 제1호 에 해당하는 자) 제외]

다. 입소절차

- ▶ 장기요양인정을 받지 않은 자는 먼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장기요양인정신청을 하여 장기요양 1~5등급으로 시설급여 판정을 받은 후 장기요양인정서를 첨부하여 아래 절차에 따라 입소한다.

※ 입소를 위한 사전 절차 : 장기요양인정신청(공단 지사) → 방문조사 → 등급판정위원회 → 장기요양인정서 수령 → 아래 입소 절차에 따라 입소

- ▶ 입소 시 반드시 기초생활수급자나 기타 의료급여수급자에 대한 입소의뢰서를 확인한 후 수급자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상자별 상세 절차는 보건복지부의 다음과 같은 상세 절차에 따른다.



1) 기초생활수급자, 기타 의료급여수급자

가) 기초생활수급자 및 기타 의료급여수급자는 해당 시군구에 입소 신청

(장기요양인정서 첨부, 입소, 이용신청서 제출)

※ 해당 시군구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기타 의료급여수급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군구

▶ 신청시에는 장기요양인정서(시설급여 이용가능)를 첨부하여야 하며, 신청접수는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에서 대리 접수 가능

나) 시군구에서는 입소여부와 입소시설 결정

※ 입소 협약 등을 거쳐 타 관할로 입소 조치하는 경우 입소시설 결정은 입소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에서 함

▶ 각 시군구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나 기타 의료급여수급자의 입소시설을 결정할 때 장기요양기관 현황, 재정상황 및 수급자의 희망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함

▶ 관내에 입소 가능한 시설이 없는 경우 타 시군구와 협의하여 입소 의뢰하거나 아래 "4. 지자체간 의료급여수급자 입소 의뢰 협약체결"에 따라 협약체결 후 입소 의뢰 가능

다) 입소 결정한 시군구는 입소 대상 시설에 장기요양기관 입소·이용의뢰서(별지 제10호 서식)를 작성하여 송부하고 신청인과 공단에 관련 내용을 통지하여야 함

라) 장기요양기관은 수급자 본인 여부, 장기요양등급, 장기 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본인일부 부담금 감경대상자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 지자체로부터 입소 의뢰된 기초생활수급자, 기타 의료급여수급자는 본인일부부담금 감경대상자임

▶ 장기요양기관은 필요한 경우 수급자에게 건강진단서를 받을 수 있음

마) 장기요양급여계약서를 작성하여 1부는 수급자에게 발급하고, 1부는 장기요양기관이 보관

▶ 장기요양급여계약서에는 계약당사자명, 계약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내용·비용 등,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함

▶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계획 및 비용(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포함)등 장기요양급여 제공과 관련된 사항을 설명한 후 동의서를 받아야 함

바) 장기요양급여 계약내역서(별지 제11호서식)를 작성하여 공단에 통보

2) 일반 노인

▶ 입소희망자는 공단의 이용지원 담당자에게 먼저 연락하여 관내에 입소 가능한 시설 명단 등을 확보

▶ 입소 가능한 시설 중 입소를 희망하는 시설을 선택하여 시설장과 상세 입소요건(비급여항목별 비용, 입소계약조건 등)을 협의(장기요양인정서 첨부)

▶ 이하 위 ‘기초생활수급자, 기타 의료급여수급자’의 라) ~ 바)와 동일

라. 구비서류

- 반도노인요양원에 입소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 장기요양급여계약서(시설 양식-각종 동의서 포함)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입소이용의뢰서(기초생활수급권자의 경우)

▶ 장기요양인정서 사본 1부

▶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사본 1부

▶ 입소자 건강진단서 또는 전염성 질환 의사소견서(결핵검진 필수)

▶ 병적기록자료 처방전(드시는 약)

마. 입소계약

- 반도노인요양원에 입소하는 모든 입소자는 반드시 각 호의 명기된 내용에 따라 입소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1) **계약목적:** 계약을 체결하는 목적은 어르신 입소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들을 정확히 명기하여 입소기간, 비용 등의 항목에 있어 시설과 보호자 사이에 상호권리를 보호하고, 분쟁을 사전에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2) **계약서:** 입소계약에는 계약당사자명, 계약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비용 등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하며,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계획 및 비용(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포함)등 급여 제공과 관련된 사항을 설명한 후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 3) **계약대상자:** 계약은 입소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입소자의 의사 표시가 불가능할 경우 자녀를 포함한 법적대리인도 가능하다.
- 4) **계약기간:** 입소기간을 계약서 상에 명시토록 하며,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단위로 시설입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5) **계약서 부분 발부:** 입소계약서는 반드시 부분을 발부하여 계약 당사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입소계약서 부분 발부 대장에 발부일 및 수령일, 수령자 이름과 연락처, 수령자 서명 등을 기재하도록 한다.
- 6) **계약해제:** 계약을 해제하고자 할때는 10일 이상의 예고기간을 갖고 당사자에게 통보하고 이에 기재된 계약해제일로 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한다.
 - ▶ 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 ▶ 2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 ▶ 타입소자의 안전과 인권에 심대한 위협이 될 때
- 7) **입소자의 의무:** 입소자는 월 이용료 납부 의무, 시설 내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의무,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각종 프로그램 참석 의무, 시설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기타 시설규칙 이행의 의무를 준수하도록 한다.
- 8) **신원인수인 권리 및 의무:**
 - ▶ 입소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
 - ▶ 입소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내역을 요청할 권리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
 - ▶ 신원인수인은 입소자의 시설에 대한 이례의 채무에 대하여 입소자와 연대하여 책임을 지고 입소인의 신원인수의 의무
 - ▶ 입소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의 의무 있어 (월 이용료, 비급여) 이외의 추가비용을 청구하지 않으나, 의료지원 서비스 이외에 입소자의 병적 사항으로 발생하는 외부 의료기관 이용비용에 대해서는 전액 본인이 부담하도록 한다. (단, 상비약의 사용은 청구하지 않는다.)
 - ▶ 입소인의 월 이용료 및 입소비용 부담의 의무
 - ▶ 입소자의 병원 입원시 입원을 거부하지 않으며 입원 후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의무

9) **입소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입소이용료의 변경은 장기요양급여 수가변경 고시가 결정되거나 비급여 본인부담금의 경우 시설운영 상황에 비추어 시설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하며, 변경된 비용은 지체 없이 계약당사자나 보호자에게 직접 통보하도록 한다. 만일, 변경된 비용에 대하여 계약당사자나 보호자가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변경 전 비용으로 해당 월 이용료를 수납하도록 하며, 통보 후 1개월 간 변경 전 비용으로 전월 및 퇴소 기간을 제공한다.

10)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반도노인요양원은 입소자에게 노인장기요양급여 서비스, 생활보호 서비스 및 의료 서비스, 여가 선용 프로그램 서비스 등을 제공함에 있어 입소비용(월 이용료, 비급여) 이외의 추가비용을 청구하지 않으나, 의료지원 서비스 이외에 입소자의 병적 사항으로 발생하는 외부 의료기관 이용비용에 대해서는 전액 본인이 부담하도록 한다. (단, 상비약의 사용은 청구하지 않는다.)

11)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의 서비스 기준과 비용 안내:**

- ▶ 입소어르신의 과잉 또는 부적절한 행동에 관한 특별서비스 기준
 - 입소자 또는 종사자 등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하게 높은 경우
 - 대체할만한 수발방법이 없거나, 증상완화의 목적으로 입소자 상태가 긴급할 경우
- ▶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로 인해 일시적으로 신체를 제한할 경우에도 노인의 심신의 상황, 신체 제한을 가한 시간, 신체적 제한 사유에 대하여 자세히 기록하고 어르신이나 가족에게 그 사실을 알린다.
- ▶ 보호를 위한 특별서비스 내용이라 함은 신체적 제한을 의미하며, 신체적 제한에 포함되는 내용은 격리보호, 낙상예방을 위한 휠체어의 안전벨트 사용, 경관튜브 제거위험 방지를 위한 신체 일부의 구속, 욕창예방 및 치료를 위한 체위변경에 따른 신체일부의 구속 등 직접적인 보호와 관련된 서비스를 지칭한다.
- ▶ 집중관찰 및 전문의료 활동에 관한 특별서비스 기준
 - 상태변화를 위한 집중관찰과 집중의료처치를 위하여 별도의 공간이나 1인용 상급침실로 옮겨 전문의료서비스(산소공급, 석션 등)를 제공할 수 있다.
- 호스피스 케어와 관련하여 격리가 필요한 경우 별도의 공간 또는 1인용 상급침실로 이동하여 편안한 환경 및 호스피스 케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 특별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1인용 상급침실로 이동할 경우 사전 본인이나 가족에게 이실에 대한 사유를 설명하고 1인용 상급 침실이용료 지급에 대한 동의를 얻는다.
- 기타 개별적인 집중케어를 위한 특별의료소모품에 관해서는 본인이나 가족이 부담한다.

12) **서비스 제공자의 권리:** 서비스 제공자인 반도노인요양원은 계약당사자에게 입소생활에 따른 입소비용을 청구할 수 있으며, 입소자의 퇴소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퇴소 및 전원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13) **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서비스제공자인 반도노인요양원은 입소자에게 안전한 시설생활여건의 조성 및 질 높은 장기요양급여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며, 입소자의 신변에 이상이 발생했을 시 적절한 응급조치와 함께 이를 보호자에게 즉시 알리도록 한다.

바.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 (반도노인요양원) 입소이용료는 다음과 같다.
 -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따른 입소 비용 및 비급여 비용
 - ▶ 장기요양등급 외 입소자는 시설과 계약자 상호 합의에 의한 입소이용료로 산정

3. 필요시 의료 이용 절차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처리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간호(조무)사의 활동사항

- ▶ 간호(조무)사는 매일 입소어르신의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건강관리기록부를 작성하여 보관한다.
- ▶ 입소어르신의 건강상태에 따라 복용약물, 체중, 혈압, 체온, 혈당 등 입소자의 건강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기록하여 방문의사가 입소어르신의 건강상태를 평가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 간호(조무)사는 입소어르신의 건강관리를 위해 의사의 조치사항을 수행하도록 한다.
- ▶ 간호(조무)사는 어르신 상태변화 및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상황에 따라 협약의료기관의 의사와 상담을 실시하여 조치사항을 수행하도록 한다.

나. 병원진료에 관한 사항

- ▶ 입소어르신의 상태변화 및 응급상황이 발생하였거나, 그 밖에 병원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 될 경우 가족 또는 보호자와 상담하여 병원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한다.
- ▶ 정기 병원진료 시 처리절차
가) 병원진료 수일 전에 가족 또는 보호자에게 정기진료에 관해 미리 알려 정상적인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한다.
나) 병원진료를 위한 가족 또는 보호자의 내원 상담을 실시한다.
다) 병원진료에 필요한 어르신의 근황과 진료에 필요한 각종 관찰기록을 가족 또는 보호자에게 제공하여 정기진료 시 진료의사가 어르신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

다. 응급상황에 따른 병원진료 의뢰 시 처리절차

- ▶ 응급상황 발생 시 가족 및 보호자에게 연락을 취함과 동시에 119구급대에 연락하여 신속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 ▶ 병원진료에 따른 후송 시 부득이 가족이나 보호자가 동행할 수 없을 경우 반도노인요양원의 종사자가 병원까지 동행할 수 있으며, 가족이나 보호자가 병원에 도착하면 어르신을 인계한 후 귀원한다.

라. 외래병원 또는 의원 방문 진료 시 처리절차

- ▶ 가벼운 질병 등(내과, 이비인후과 등)으로 외래병원이나 의원을 방문하여 진료가 필요한 경우 원칙적으로 가족이나 보호자가 동행하여야 하나 부득이 동행할 수 없을 때에는 반도노인요양원 직원이 동행하여 보호자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다. 단, 발생하는 진료비는 전액 가족이나 보호자가 부담한다.
- ▶ 입소어르신의 병원진료(정기, 수시) 시 가족이나 보호자가 함께 동행하여야 함을 원칙으로 한다.
- ▶ 병원진료를 위한 이동 시 개인적 필요에 의하여 병원 등을 이용할 경우 이동에 따른 차량이용료는 본인 또는 가족이 별도로 부담한다.

마. 전원조치에 대한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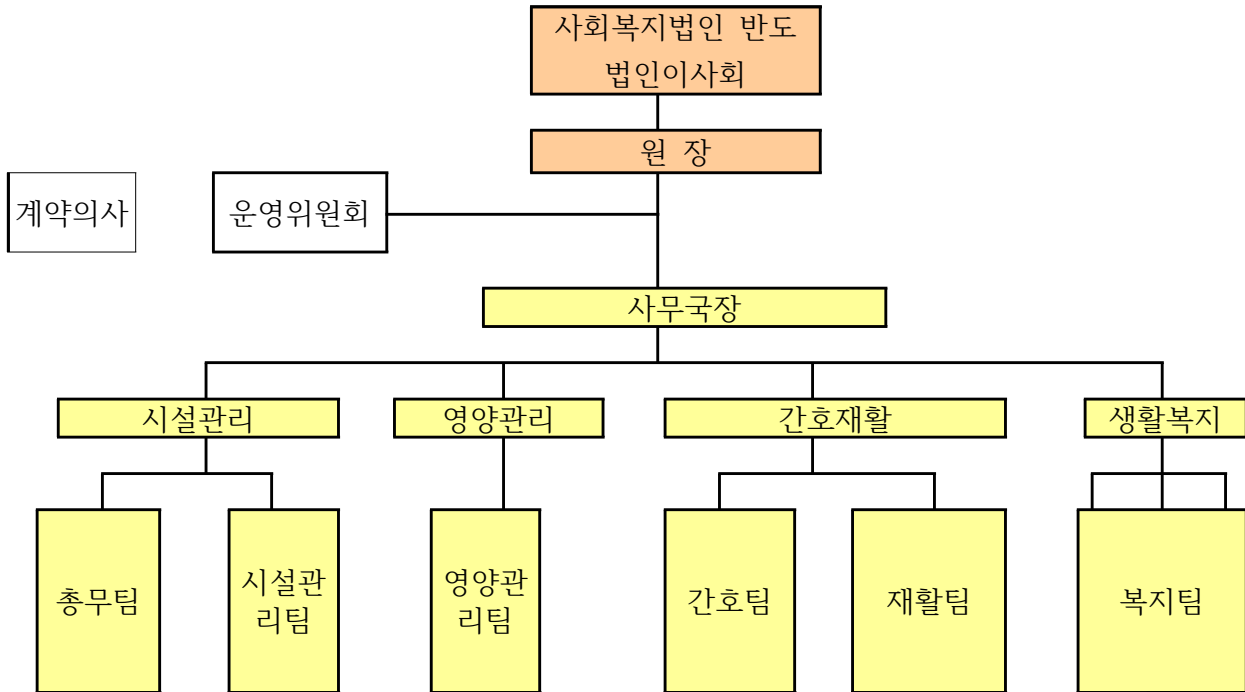
- ▶ 질환의 증상 악화로 인해 전문적인 의료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시설장은 본인 또는 가족과 협의하여 전원조치 할 수 있다.
- ▶ 기타 사유로 본인이나 가족이 전원을 원할 경우 시설장과 협의하여 전원할 수 있다.

4. 시설물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에 관한 사항

- ▶ 입소자가 비품 또는 기물을 고의 또는 과실로 파손, 훼손한 때는 이의 없이 이를 변상한다.
- ▶ 시설물 사용에 있어 본인 부주의로 인하여 일어난 과실에 대하여 시설은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단, 영업배상책임보험으로 보장이 가능한 사안은 영업배상책임보험으로 보상한다.
- ▶ 반도노인요양원의 종사자는 시설물 관리 소홀과 위험물 방치로 일어날 수 있는 시설물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한다.

3 종사자 근무체계

○ 반도노인요양원 조직도



○ 직원 배치 인력

1. 직종별 직원 배치 인력

구분	계	시설장	사무국장	사무원	간호 (조무)사	물리 치료사	축탁 의사	사회 복지사	요양 보호사	영양사	조리원	관리인	위생원
인원	67	1	1	1	5	2	1	3	46	1	5	1	위탁

2. 직원 근무형태별

부서	인원	근무 형태	평일근무			토, 일, 공휴일근무
			주간	야간	휴무	
요양보호사(일반실)	46	2교대	19~25	7	14~20	근무표의함
요양보호사(치매전담실)	8	2교대	4	1	3	근무표의함
사회복지사	3	주간	3	-	-	근무표의함
간호(조무)사	5	주간	5	-	-	근무표의함
물리치료사	2	주간	2	-	-	근무표의함
영양사	1	주간	1	-	-	근무표의함
조리원	5	주간	4	-	1	근무표의함
위생원	위탁	-	-	-	-	근무표의함
관리원	1	주간	1	-	-	근무표의함
사무원	1	주간	1	-	-	근무표의함
사무국장	1	주간	1	-	-	근무표의함
시설장	1	주간	1	-	-	-

4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1.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2023년도 기타 비용(비급여) 부담액>

구분	식재료비	간식비	기타(이-미용비, 상급침실 이용비 등)
1일당 비급여비용	2,000원	1,000원	무료

<2023년도 일반실 장기요양급여비용 고시금액>

급여유형	일반실 (장기요양등급 1, 2, 3, 4, 5)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2023년도 (1일당)	81,750원	75,840원	71,620원

급여유형			일반실(30일, 일반수급자(20%))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본인 부담액 (30일)	급여비용	본인부담금	490,500	455,040	429,720
	기타비용	식재료비	180,000	180,000	180,000
		간식비	30,000	30,000	30,000
	합계		700,500	665,040	639,720

<2023년도 치매전담실 장기요양급여비용 고시금액>

급여유형	치매전담실 (장기요양등급 2, 3, 4, 5)	
구분	2등급	3등급
2023년도 (1일당)	89,540원	82,570원

급여유형			치매전담실(30일, 일반수급자(20%))	
구분			2등급	3등급
본인 부담액 (30일)	급여비용	본인부담금	537,240	495,420
	기타비용	식재료비	180,000	180,000
		간식비	30,000	30,000
	합계		747,240	705,420

5

화재보험 및 영업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

보험명	보장기간	비고
복지시설 배상책임보험	2022.10.01.~2023.10.01	보험증권사본 시설 내부게시물 참조
일반화재보험	2022.11.22.~2023.11.22	
가스사고 배상책임보험	2022.11.22.~2023.11.22	
승강기사고 배상책임보험	2022.10.02.~2023.10.02	

6

최종 장기요양기관평가 결과

○ 최종 장기요양기관 평가년도: 2018년도

○ 장기요양기관 평가결과: A (최우수) 등급

급여종류	구분	기관운영	환경 및 안전	수급자권리보장	급여제공과정	급여제공결과
입소시설30 인이상	A(최우수) 2018 정기평가	90점	100점	86점	88점	87점



반도노인요양원 특수성(장점)

1. 노인요양시설 내 치매전담실 가형(32인실)을 운영
2. 요양원 위치가 남향에 자리를 잡고 있어 입소 어르신들의 산책 및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유지함
3. 반도병원 협약기관으로 응급이 발생이 되었을 시 긴급하게 진료를 받아 볼 수 있음
4. 박안과와 협약기관으로 안과 진료 봉사 방문으로 인하여 정기검진을 받을 수 있음
5. 노인인권지킴이 활동 기관으로서 입소자 및 종사자 인권을 철저히 관리하고 있음
6. 코로나 극복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되어 표창을 수여함
7. 2018년도 장기요양기관 평가 A를 받아 연속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됨
8. 2018년도 사회복지 우수 프로그램 기관으로 선정됨
9. 노인복지생활시설 노인인권보호 및 네트워크 구축사업 참여 시설
10. 청구상담봉사자가 7년 이상 올바른 청구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는 기관.